

재정지표로서의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옥 동 석**

요약문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 국가채무의 규모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지표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통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여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완전히 다른 통계지표이다.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우리나라 국가채무 지표가 국가 간의 비교가능성, 재정의 건전성 판단 등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를 개략적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체계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핵심주제어: 국가채무, 정부부채, 재정건전성,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JEL 번호: H5, H74

I. 머리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 국가채무의 규모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의 비율

* 본 연구의 추정을 위하여 중앙정부 공공기관 214개, 지방정부 공공기관 115개의 재무제표 및 차입금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박계동 국회의원과 이문영 비서관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유익한 지적과 비판을 해 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자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dsock@incheon.ac.kr

논문투고일 : 2007년 6월 28일, 심사완료일 : 2007년 8월 15일

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국가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평균 77.7%이지만 우리나라는 33.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지표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통계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여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완전히 다른 통계지표이다. 다시 말해 OECD 국가의 평균 비율 77.7%는 GDP대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이지만, 우리나라의 33.4%는 국가채무라는 제한된 개념의 수치일 뿐이다.

‘일반정부 총금융부채’가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심지표로 등장한 것은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예컨대 영국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National Debt’라는 통계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회계와 재정용자특별회계의 국채 및 차입금 규모를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지표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일반정부 또는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채 또는 채무 개념을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EU국가들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반정부 전체의 채무(debt)를 기준으로 재정운용의 준칙을 설정하고 있다. OECD는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과 관련되는 지표로서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를 발간 공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우리나라 국가채무 지표가 국가 간의 비교가능성, 재정의 건전성 판단 등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²⁾ 제Ⅱ절에서는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의 기초가 되는 ‘일반정부’와 ‘금융부채’의 개념을 국제적인 기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절에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제시된 ‘채무’의 정의와 함께 OECD 국가의 재정건전성 지표를 설

1) 대한민국 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p.53; 재정경제부 국고국, 「05년말 국가채무현황」, 보도자료, 2006년 3월 31일 참조.

2)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과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는 고영선외(2004), 박형수박기백(2003) 등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국제비교 기준으로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박형수박기백(2003)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기준을 일부 소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명한다. 특히 영국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가를 조명하며 국가채무 지표가 한계가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제IV절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개념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와 여타 지표를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기로 한다. 제V절은 맺음말로써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등 재정건전성 지표들을 체계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II. 일반정부의 부채와채무

1. 일반정부

UN이 발간한 19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지침에 의하면 국민경제는 ‘가계부문’ ‘비금융기업부문’ ‘금융기업부문’ ‘가계지원 비영리기관부문’ ‘일반정부부문’의 5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부문 분류의 기본 단위는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로서, 제도단위는 법인격을 갖는 개인과 기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상 개인들은 ‘가계부문’을, 영리법인인 기업은 ‘비금융기업부문’과 ‘금융기업부문’을, 정부조직은 ‘일반정부부문’을 구성한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성격과 사업내용에 따라 ‘가계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문으로 각각 분류될 수 있다.

비영리기관의 부문별 분류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 비영리기관’과 ‘시장외적 비영리기관’을 구분하여야 한다. ‘시장 비영리기관’은 산출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으로 판매하는 생산자를, ‘시장외적 비영리기관’은 무료 또는 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생산자를 말한다.³⁾

비영리기관 중에서 ‘시장 비영리기관’은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금융기업’ 또는 ‘금융기업부문’으로 분류될 것이다.⁴⁾ 반면 ‘시장외적 비영리기관’은 ‘일반정부’ 또는 ‘가계

3)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이란 생산자의 공급의도 물량과 구매자의 구입의도 물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가격(*prices which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mounts the producers are willing to supply and on the amounts purchasers wish to buy*)으로 정의된다. UN(1993), p.95, 문단 4.58 참조.

4) UN(1993), p.90, 문단 4.23에 의하면 기업은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지원 비영리기관부문'으로 분류될 것이다. 이들의 재원은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정기적인 회비 또는 일반 국민들의 기부 또는 증여가 될 것이다. '시장외적 비영리기관'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또 그 재원이 주로 정부에 의해 조달되면 '일반정부부문'으로 분류된다.

IMF는 SNA지침의 부문 분류에 입각하여 재정통계의 범위를 '일반정부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IMF는 재정통계의 국제적 기준으로서 GFSM(*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을 발간하고 있는데, 재정통계의 범위를 '일반정부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GFSM은 일반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들을 공기업으로 규정하고, '일반정부부문'과 '공기업부문'을 묶어 공공부문(public sector)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정부의 통제란 적절한 경영자들을 지명하여 일반적인 기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유럽연합은 SNA지침을 회원국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ESA 1995(*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를 제정하였다.⁵⁾ ESA지침은 경제부문 분류에 대하여 SNA지침을 수용하고 있는데, 비영리기관인 제도단위에 50%규칙을 적용하여 경제부문을 분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ESA지침은 비영리기관을 '시장 비영리기관'과 '시장외적 비영리기관'으로 구분하는 기준인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을 '50% 규칙'으로 판단하고 있다.⁶⁾

50%규칙에 의하면 비영리기관은 '매출액/생산원가'를 평가하여 그 값이 50%를 초과하면 '시장 비영리기관'으로, 그렇지 않으면 '시장외적 비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매출액(sales)은 산출물의 물량 또는 가치에 연계되어 비영리기관이 수령하는 금액이며, 생산원가(production cost)는 중간재, 피용자보상, 고정자본소비,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들의 전체 합계다. 만약 생산과정에서 보조금이 제공된다면 이들 보조금은 생산원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기관(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소유자들에게 이윤 또는 기타 금전적 이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법적 실체로서, 이들은 일반적인 경영에 책임을 지는 경영자들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 지분소유자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된다"고 정의된다.

5) EUROSTAT(1996) 참조.

6) EUROSTAT(1996), p.41, 문단 3.32 참조.

반정부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으로 구분하는 논의가 본격 시작되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유형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을 ‘자체수입비중(=자체수입액/총수입액)’ 50%를 기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였다.⁷⁾ 즉 자체수입비중이 50%를 초과하면 ‘시장성’이 큰 기관으로, 50% 미만이면 ‘공공성’이 큰 기관으로 각각 간주하는 것이다. 이 비중이 85% 이상이면 시장형 공기업으로, 50%~85%이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자체수입비중이 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특성상 공기업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체수입/총수입’으로 계산되는 ‘자체수입비중’은 시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ESA지침의 ‘매출액/생산원가’에 비견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자체수입비중’은 시장성 여부를 적절히 반영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지균형을 준수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총수입’은 당해 공공기관의 전체 산출물에 대한 ‘생산원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정의하는 ‘자체수입’은 ESA지침의 매출액과 달리 ‘산출물의 물량 또는 가치에 연계하여 수령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체수입비중’은 ‘시장기능으로 조성된 수입’으로 ‘생산원가’가 보전되는 비중이라 볼 수는 없다. 반면 ESA지침의 ‘매출액/생산원가’는 시장기능으로 재원이 보전되는 비중을 반영하고 있다.

자체수입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서비스로부터 나타나는 수입을 반영하는데, 당해 서비스에 대한 ‘법령상 공급독점’ 및 ‘이용의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⁸⁾ 예컨대 특정 서비스로부터 나타나는 수입이 100원이라고 하자. 당해 서비스가 공급독점이 아니고 이용이 비강제된 경우에는 자체수입을 100원, 공급독점이며 이용이 강제된 경우에는 자체수입을 25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치의 논거는 분명

7) 기획예산처는 2007년 4월 2일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에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들 대부분을 대상으로 기관의 유형을 구분 고시하였다. 대상기관은 모두 102개인데, 공기업 24개(시장형 6개, 준시장형 18개), 준정부기관 78개(위탁집행형 65개, 기금관리형 13개)로 구분하였다. 그 나머지 196개 공공기관들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부록의 <표 A-3> 참조.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와 [별표 2]는 자체수입을 정의하고 있다. 자체수입 중 고유목적사업은 ‘공급의 독점성’과 ‘소비의 강제성’이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100%~2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하고 있다.

하지 않다. 다만 공급독점이며 이용이 강제된 경우에는 수입의 25%만을 '시장기능으로 조성된 수입'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로 추측될 뿐이다.⁹⁾

ESA지침의 '매출액/생산원가' 비율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자체수입/총수입' 비중은 이론적인 근거가 취약하다. 만약 '매출액/생산원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근거로 나타나는 수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공공기관의 산출물과 직접 연계한 계약에 의해 제공된다면 이는 공공기관의 매출수입이 된다. 원칙적으로 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립한 계약을 기초로 정부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금액이 매출수입으로 간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특별한 입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이 대부분이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정부보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산위험(또는 도산위험)에 따른 자기조정력'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물론 특수법인은 국가(중앙행정기관)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특수법인의 부채가 중앙정부의 부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수법인의 운영에 정부가 오랫동안 다양한 개입과 통제를 해 왔다면 정부는 재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특수법인의 자기책임성을 저해할 정도로 공공기관에 강력한 소유권을 행사한다면 특수법인이라는 법적 형식 자체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은 상당한 경제적 지원(생산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이 되며 공공기관의 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자기책임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형태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수법인은 실질적으로 자기책임성이 낮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반면 일반적 입법(상법,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자기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시장성을 판단하여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운영채원 대부분을 '시장기능으로 조성된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 공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

9) '공급의 독점성'과 '이용의 강제성'이 높아 공공서비스의 수입이 공공서비스의 원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면 이들은 SNA지침에 따라 조세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세수입은 '시장기능으로 조성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수입비중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는 시장성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옥동석(2007) 참조.

할 것이다.¹⁰⁾

결론적으로 말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반정부부문과 공기업부문을 구분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의 구분은 재정범위, 재정통계의 정비 외에도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 그리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사용하고 있는 ‘자체수입비중’은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운영구조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서는 준정부기관을 분류할 때 기관의 자기책임성과 ‘매출액/생산원가’ 비중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금융부채

SNA지침은 일반정부부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부채의 분류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작성하고 있지 않지만 SNA지침은 국민경제 전체의 대차대조표 작성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대한 국제적인 통계 및 회계개념을 정의하고 있다.¹¹⁾ 특히 일반정부 부문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개념은 재정건전성 통계지표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SNA와 GFSM을 중심으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자산은 금융자산(financial assets)과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s)으로 구분된다. 금융자산은 ‘화폐용 금’, SDR, ‘금융청구권(financial claims)’으로 구성된다. 금융청구권은 다시 ‘통화와 예금(currency and deposits)’,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securities and other than shares)’, ‘융자(loans)’, ‘주식 및 기타 지분(shares and other equity)’, ‘보험책임준비금(insurance technical reserves)’, ‘파생금융(financial derivatives)’, ‘기타 미수/미지급 계정(other accounts receivable/payable)’ 등으로 구분된다.¹²⁾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청구권은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그 소

10) OECD(2005)의 문단 21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공기업 관련 법규체를 간결화 함에 있어, 정부는 가능한 상법에 기초하여야 하며, 공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 법규의 제정은 피해야 한다.

11) 2007년 현재 한국은행은 경제통계국 내에 국민대차대조표반을 구성하여 대차대조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UN(1993), pp.295~297과 IMF(2001) 제7장 참조.

유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산이 된다. 그런데 금융청구권이 발생하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동액의 부채(liabilities)가 발생한다.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에 상응하여 채무자가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금융자산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우발부채는 금융부채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확정채무 또는 우발채무를 미래에 상환하기 위해 적립한 충당금(provisions)이나 미래의 예상지출에 대비한 충당금도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¹³⁾

이제 금융자산의 유형을 자세히 조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형태의 금융부채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중앙은행이 보유하거나 발행하는 ‘화폐용 금(monetary gold)’ ‘특별인출권(SDR)’ ‘통화(currency)’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금(deposits)’은 실질적인 지급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금융부채를 구성한다.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securities and other than shares)’은 양도 가능 금융수단으로서, 이를 발행한 제도단위가 이를 보유한 제도단위에게 현금·금융수단·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거래를 청산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한다. 공공기관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금융부채를 구성할 것이다.

‘융자(loans)’의 경우 융자금을 수취하는 기관에서는 상응하는 금액이 차입금으로서 금융부채가 될 것이다. ‘주식 및 기타 지분(shares and other equity)’은 기업에 대한 모든 채권자의 청구권이 상환된 이후에 남는 기업의 잔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증명한다. 잔여가치는 실질적인 지급의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부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보험책임준비금(insurance technical reserves)’은 연기금 및 생명보험에 대한 가계의 순지분(net equity), 비생명보험의 선납보험료, 그리고 기존 청구권에 대한 준비금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은 비생명보험제도와 비자립형 또는 비적립식 연기금의 운영자로서 보험책임준비금에 대한 부채를 부담할 수도 있고, 비생명보험의 가입자로서 자산을 보유할 수도 있다.¹⁴⁾ ‘파생금융(financial derivatives)’은 특정 금융수단·지표·상품에 연계

13) SNA지침인 UN(1993)의 문단 13.22와 GFSM인 IMF(2001)의 문단 7.17 참조.

14) IMF(2001)의 문단 7.120~7.126 참조. GFSM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정부가 미래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여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비용자 등을 위한 연기금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 이의 보험책임준비금은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되는 금융수단인데, 금융자산에 상응하여 금융부채가 인식되어야 한다.

‘기타 미수/미지급 계정(other accounts receivable/payable)’은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신용(trade credits)과 선급금, 그리고 기타 수취 또는 지급되어야 할 항목들로 구성된다. 거래신용과 선급금은 ①재화와 용역의 구입자에게 직접 제공된 거래신용과 ②진행 중인 또는 진행예정인 작업에 대한 선급금(건설 도중에 지급되는 중도금,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선급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신용은 대금수취의 정상적 지연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고 구매자에 대한 판매자의 의도적인 신용공급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미지급계정은 금융부채를 구성할 것이다.

III. 재정건전성 관련 국제비교 재정지표

1. OECD의 정부부채와 정부채무

OECD는 매월 발간되는 ‘*OECD Economic Outlook*’에서 회원국들의 경제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 통계를 재정운용에 관한 국제비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재정건전성과 관련되는 재정지표로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와 ‘일반정부 순금융부채’가 있다.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는 SNA지침에서 정의된 일반정부 부문 내 모든 제도단위들의 채무 및 기타 부채로 정의된다.¹⁵⁾ 그리고 순금융부채(net financial liabilities)는 총금융부채에서 금융자산을 공제하여 측정된다. GDP대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비율에 대한 OECD 각국의 통계는 <표 1>과 같다.

그런데 이 통계는 각국이 OECD에 보고한 통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SNA지침에 엄격하게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각종 통계가 SNA지침에 따라 작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재정통계에 대해 공통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기관에 대해 준정부기관, 공기업, 민간기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럽연합의 의견을 자문 받고 있다.¹⁶⁾

15) OECD, *Notes to statistical Annex Tables, Sources and Methods of the OECD Economic Outlook*, 8 September 2006 참조.

<표 1> GDP대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비율(%)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캐나다	96.3	95.2	91.4	82.1	82.1	80.6	76.5	72.1	70.8
프랑스	68.4	69.9	66.5	65.2	63.8	66.8	71.0	73.3	76.1
독일	60.4	62.2	61.5	60.4	59.7	62.1	65.4	68.8	71.1
스웨덴	82.5	81.3	71.3	63.9	62.9	59.8	59.3	58.9	59.5
덴마크	72.7	69.0	63.2	56.3	53.8	54.5	53.4	49.9	41.4
네델란드	80.9	79.3	70.9	63.7	59.4	60.3	61.4	61.9	61.4
일본	102.3	114.9	128.9	137.1	145.2	154.0	160.2	168.1	173.1
한국	7.5	13.1	15.6	16.3	17.4	16.6	18.4	22.6	24.9
뉴질랜드	42.3	42.2	39.6	37.4	35.4	33.6	31.7	29.1	28.2
영국	53.0	53.6	48.5	45.7	41.0	41.3	41.8	43.7	46.7
미국	67.6	64.5	61.0	55.2	55.2	57.5	60.8	61.6	61.8
EURO 전체	79.4	79.9	78.2	75.1	73.8	74.1	75.1	76.0	77.3
OECD 전체	72.5	73.0	72.4	69.6	69.8	71.9	74.2	75.8	76.9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 Statistical Annex Tables, Annex Table 32, November 2006, www.oecd.org/document 참조

미국은 국민계정에서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경제를 기업(Business), 가계 및 기관(Households and Institutions), 일반정부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정부는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로 구분되는데, 연방정부의 범위는 연방예산의 제도단위 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주·지방정부의 범위는 통계청(Census Bureau)의 자료를 적절히 선택하여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정부 외에 정부기업(Government enterprises)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통계처리가 SNA지침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2007년 현재 SNA지침과 일치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¹⁷⁾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일반정부의 범위를 2007년 현재까지도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회계단위 기준의 일반정부 범위가 제도단위 기준의 일반정부 범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이들 통계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회계단위 기준의 범위와 제도단위 기준의 범위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⁸⁾

16) ONS, "The National Accounts Classification Committee(NACC)," www.statistics.gov.uk/about/Methodology_by_theme/downloads/About_NAC.pdf. 여기서 문단 13은 이러한 내용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7) 미국의 기업부문은 SNA지침의 비금융기업부문과 금융기업부문을, 가계 및 기관부문은 SNA지침의 가계부문과 가계지원 비영리기관부문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다. 미국 국민계정의 부문 분류등 방법론에 대해서는 BEA(2005)와 Moulton(2007)을 참조.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일반정부 총공공채무 (general government gross public debt)’를 추가로 평가하고 있다. 채무(debt)의 개념에 대해서는 SNA, GFSM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규정된 ‘채무’는, 총금융부채에서 각종의 통상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신용’ 또는 ‘미수/미지급 계정’, 보험 책임준비금이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평가가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에서는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반정부 총공공채무’에서는 명목가격으로 이루어진다. <표 2>는 ‘일반정부 총공공채무’에 대한 OECD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일반정부 총공공채무’에 대한 정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일반정부 총공공채무(Maastricht definition of general government gross public debt)

총채무(gross debt)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의정서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규정된다(1993년 12월의 EC Council Regulation No. 3605/93 참조).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채무는 일반정부 내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통합된다.

·채무는 현금 및 예금, 증권 및 단기채권, 장기채권, 기타 단기 용자, 기타 중장기 용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ESA의 정의를 따른다.

·거래신용(trade credits)과 같은 금융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스트리히트 기준의 총채무는 SNA에 기초하여 규정된 OECD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개념과 실질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첫째, 마스트리히트 기준의 총채무는 ESA/SNA에서 정의되고 있는 거래신용(trade credits)과 선금(advances), 주식(shares) 그리고 보험책임준비금(insurance technical reserves)을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정부의 채권(bonds)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에 따라 명목가격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SNA 기준의 시장 가격 또는 발행가격에 발생이자를 합한 것이다.

자료: OECD, *Notes to statistical Annex Tables, Sources and Methods of the OECD Economic Outlook*, 8 September 2006.

2. 영국의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순채무¹⁹⁾

영국은 1700년대 초기에 은행과 금융시장이 형성되며 증권과 채권 발행을 통하여 재정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점차 국가채무(National Debt)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는 일반회계(Consolidated Fund)의 총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1968년 이후에는 재정

18) 일본 재정범위의 문제점은 옥동석(2004) 참조.

19) 본 절의 내용은 ONS(2005)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용자회계(National Loans Fund)의 총부채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공공부문에서 중앙정부 이외의 부분이 제외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의 부채를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채무통계는 정부 내부의 채권 채무가 상계되어야 하지만, 국가채무는 정부의 여타 부분에 대한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국가채무에 대한 통계는 2004년 3월 31일을 끝으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제반 자료들은 ‘일반회계’와 ‘재정용자회계’에서 여전히 파악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국가채무의 한계가 널리 인식되면서, 영국에서는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 금액을 평가하여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국가채무를 보다 확대하여 19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순 공공부문채무(NPSD, Net Public Sector Debt)’라는 통계를 생산하였다. 1999년 1월부터는 영국 통계청(ONS)이 주도하여 ‘순 공공부문채무’를 공표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순 공공부문채무’의 명칭을 ‘공공부문 순채무(PSND, Public Sector Net Debt)’로 변경하였다.

영국에서는 재정운용준칙에서 ‘공공부문 순채무’를 중심지표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는 ‘대부분의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ies)’에서 은행예금과 같은 유동성 금융자산(liquid financial assets) 보유액을 공제한 값이다.²⁰⁾ 여기서 금융부채는 SNA지침과 달리 시장가격이 아닌 명목가치로서 측정되며, 또 SNA지침의 금융부채와 달리 파생금융, 미지급계정이 제외된다. 충당금과 우발채무는 SNA지침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금융부채’에서 제외된다.

IV.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관련 재정지표

1. 국가채무

OECD의 통계자료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GDP대비

20) 영국에서는 재정운용준칙으로 황금규칙(Golden Rule)과 지속가능투자규칙(Sustainable Investment Rule)을 확립하였는데, 지속가능투자규칙은 공공부문 순채무가 GDP대비 40%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비율은 2005년말 현재 24.9%로서 OECD 국가의 평균치 76.9%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에 보고하는 ‘일반정부의 총금융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부채의 상당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체의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있다.²¹⁾ 이를 ‘국가채무’라고 부르는데 2005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248조원으로 GDP대비 30.7%에 달한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38.8조원,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20.1조원,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 채무는 10.9조원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다.²²⁾

<표 3>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국가채무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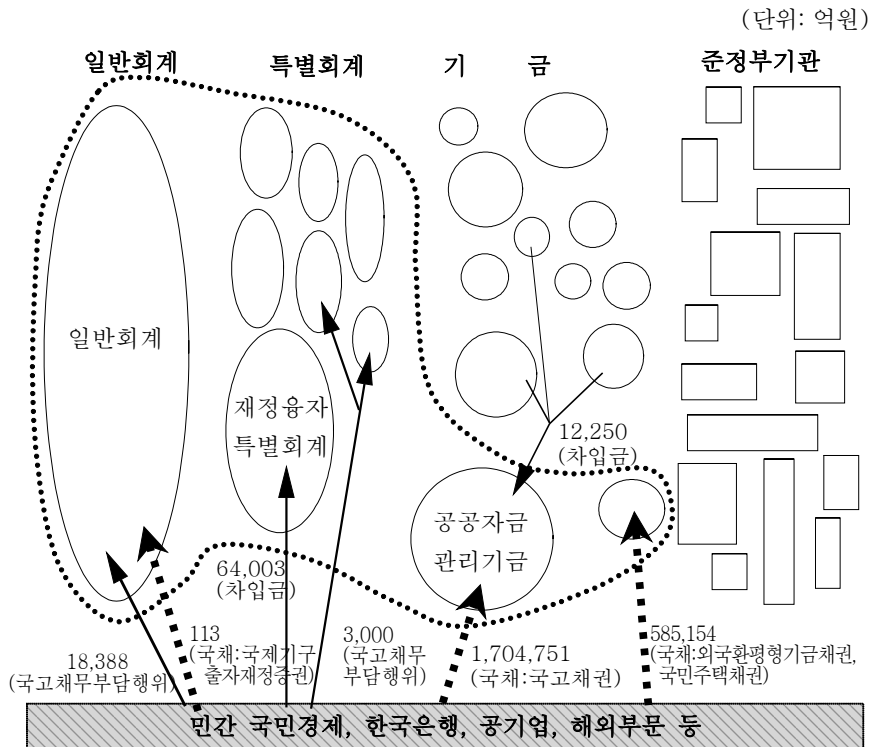
From To	차입금				소계	국채	국고채무 부담행위	합계
	국내차입			해외차입				
	한은 일시 차입	기타차입 공자기금외	산업은행					
2002년					207,355	1,031,314	27,629	1,266,297
일반회계	(0)	(0)	(0)	(531)	531	113	19,100	19,744
특별회계	(9,500)	(0)	(0)	(183,869)	193,369	0	8,529	201,898
공자기금등	(0)	(12,313)	(1,142)	(0)	13,455	1,031,201	0	1,044,656
2003년					157,501	1,406,331	24,414	1,588,247
일반회계	(0)	(0)	(0)	(434)	434	113	17,957	18,504
특별회계	(19,400)	(0)	(0)	(125,367)	144,767	0	6,457	151,225
공자기금등	(0)	(12,300)	(0)	(0)	12,300	1,406,218	0	1,418,518
2004년					106,550	1,829,316	25,000	1,960,865
일반회계	(0)	(0)	(0)	(59)	59	113	18,712	18,884
특별회계	(8,300)	(0)	(0)	(86,091)	94,391	0	6,288	100,679
공자기금등	(0)	(12,100)	(0)	(0)	12,100	1,829,203	0	1,841,303
2005년					76,253	2,290,018	21,388	2,387,659
일반회계	(0)	(0)	(0)	(0)	0	113	18,388	18,501
특별회계	(8,300)	(0)	(0)	(55,703)	64,003	0	3,000	67,003
공자기금등	(0)	(12,250)	(0)	(0)	12,250	2,289,905	0	2,302,155

자료: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년도, NAFIS.

- 21) 차입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을 의미한다. 국채는 일반회계의 국제기구출자재정증권, 특별회계의 공공용지보상채권, 양곡증권 정리기금의 양곡증권, 외국환평형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원화, 외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권, 국민주택기금의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구성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 22) 재정경제부, 「05년말 국가채무 현황」, 보도자료, 2006년 3월 31일.

<표 3>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구성요소들을 보다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2005년의 경우 일반회계에는 차입금이 없으며 국채(국제기구출자채정증권) 잔액은 113억원 그리고 차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국고채무부담행위가 1조 8,388억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회계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한은일시차입이 8,300억원, 해외차입이 5조 5,703억원이 있으며, 그리고 특별회계 전체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3,000억원이 있다. 기금의 경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여타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조 2,25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발행한 국고채권은 170조 4,751억원이 있다. 그 외 외국환평형기금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발행한 국채의 잔액은 58조 5,154억원이 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일반정부와 국가채무



<표 3>에서 살펴본 국가채무는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의 개념과 크게 다르다. [그림 1]은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림에서는 일반정부 부문에 포함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준정부기관을 보여주

고 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타원형으로, 기금은 원형으로 그리고 준정부기관은 사각형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다. <표 3>의 국가채무를 평가하는 범위는 [그림 1]에서 점선의 폐곡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그리고 기금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²³⁾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의 개념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일반정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준정부기관들을 망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SNA지침에 의거하여 금융부채는 대차대조표 상의 거의 모든 부채항목을 망라하지만 국가채무는 차입금과 국채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포함하고 있다.

2.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OECD 선진국과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의 총금융부채를 망라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일반회계에서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이외에 별도의 금융부채 항목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별회계와 기금에서는 대차대조표가 작성되는데, 여기서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이외에 별도의 부채항목이 추가로 존재한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대차대조표는 입수가능하지만 이들의 부채총액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대차대조표에서 일반정부 내부거래가 구분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금의 경우 2005년말 기준으로 내부거래를 차감한 부채 현황 자료가 <표 4>와 같이 입수가능하였다. 기금의 총부채 445.2조원에서 국채발행액 229.0조원, 기금의 내부거래 119.7조원을 차감한 잔액은 96.5조원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서 제외되지만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에는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라 할 수 있다.

23) 그림에서 화살표는 국가채무를 표시하고 있다. 일반회계의 국채(113억원)와 국고채무부담행위(1조 8,388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한은일시차입 8,300억원, 해외차입 5조 5,703억원)과 특별회계 전체의 국고채무부담행위(3,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타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1조 2,250억원)과 국채(170조 4,751억원), 그리고 외환평형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의 국채(58조 5,154억원)가 국가채무를 구성한다.

<표 4> 기금의 부채 현황(2005년 기준)

(단위: 조원)

기 금	총부채(A+B)	국채 발행액(A)	국채제외 부채(B)	정부내부거래 내역
공자기금	185.0	170.5	14.5	정부내부거래 13.3
외 평	67.8	21.4	46.4	공자차입 45.7
국민주채	50.9	37.1	13.8	공자차입 2.6; 재특농특 차입 2.6
공적자금	42.8	0	42.8	공자차입 42.4
양 곡	4.8	0	4.8	공자차입 4.8
공무원연금	2.5	0	2.5	재특차입 1.1
농 지	2.2	0	2.2	공자차입 1.7; 재특차입 0.5
남 북	1.8	0	1.8	공자차입 1.8
중 산	12.1	0	12.1	재특차입 1.9; IBRD차관 0.2
사학진흥	0.4	0	0.4	재특차입 0.4
근로자복지	0.2	0	0.2	IBRD차관 0.2
주택금융보증	0.7	0	0.7	IBRD차관 0.2
대외경제	0.2	0	0.2	재특차입 0.2
장애인고용	0.1	0	0.1	재특차입 0.1
고용보험	9.8	0	9.8	실업급여 책임준비금
산재기금	4.1	0	4.1	산재급여 책임준비금
예 보 채	51.9	0	51.9	정부보증채
부 실 채	4.4	0	4.4	정부보증채
기 타	3.5	0	3.5	기타 43개 기금의 총부채
합 계	445.2	229.0	216.2	정부내부거래 합계 119.7조원

자료: 기획예산처 내부자료(2006),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재완에게 제출한 자료.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에는 기금의 부채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의 부채도 반영되어야 한다. <표 5>는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자료를 요약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기획예산처가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공기관의 전체 개수는 314개인데, 이들 중 214개 기관에 대해 2006년 10~12월 기간 중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협조로 대차대조표 및 차입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14개 기관 중 176개는 준정부기관으로 나머지 38개는 공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제II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기업을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한정하였다.²⁴⁾ 본 연구의 조사대상 214개 기관의 목록은 부록의 <표 A-1>, 조사제외된 100개 기관의 목록은

24) 공기업을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간주하는 이와 같은 기준은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의 최대치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표 A-2>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정부에 포함되어야 할 '준정부기관' 176개의 총부채는 213.8조원이다. SNA지침에 의하면 각종 충당금과 우발채무의 합계액 4.2조원은 총금용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²⁵⁾ 그리고 차입금의 일반정부 내부거래는 중앙정부 회계차입, 중앙정부 기금차입, 공공기관 차입의 합계 금액인데 대략 57.5조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준정부기관 176개의 총금용부채는 약 152.3조원으로 평가된다. 만약 조사 제외된 공공기관 90개를 추가로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준정부기관' 전체의 총금용부채는 약 2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²⁶⁾

그런데 <표 5>는 예결위 조사대상 214개 기관 중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38개 기관들만 공기업으로 간주하였다.²⁷⁾ 만약 상법 대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을 인정한다면 일반정부의 범위는 줄어들 것이다. <표 6>은 기획예산처의 고시에 따라 <표 5>의 준정부기관 중 14개를 공기업으로 간주한 것이다.²⁸⁾ 162개 준정부기관의 총부채 138.9조원에서 충당금과 우발채무의 합계액 3.2조원, 정부 내부차입 33.8조원을 공제하면 총금용부채는 약 101.9조원으로 계산된다. <표 6>에 의하면 우리나라 준정부기관 전체의 총금용부채는 147.1조원으로 추정된다.²⁹⁾

25) 각종 충당금은 모두 4.1조원인데 보험예치금 등으로 적립된 자금은 0.2조원에 불과하다. SNA지침에 의하면 총금용부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충당금 전액, 4.1조원인지 아니면 보험예치금 0.2조원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26) 자료가 입수되었던 214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50.0조원인데 이 금액의 60.9%인 152.3조원이 준정부기관의 총금용부채로 평가되었다. 이 비율을 자료가 입수되지 않았던 90개 공공기관(총부채 110.8조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67.5조원의 금액이 계산된다.

27) 한국전력공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니지만 그 주식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표 5>에서 공기업으로 간주하였다.

28) 이들은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산재의료관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다.

29) 자료가 입수되었던 214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50조원인데 이 금액의 40.8%인 101.9조원이 준정부기관의 총금용부채로 평가되었다. 이 비율을 자료가 입수되지 않았던 90개 공공기관(총부채 110.8조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45.2조원의 금액이 계산된다.

<표 5>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현황(2005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조사대상		조사제의 공공기관 ¹⁾ (90개)	비 고
	준정부기관 (176개)	공기업 (38개)		
총 자산	307,319,715	101,886,795	154,657,200 ²⁾	한국은행등 10개 기관 제외 ¹⁾
유동자산	163,801,755	11,722,780	n.a.	
총 부 채	213,797,483	36,204,299	110,838,381 ²⁾	한국은행등 10개 기관 제외 ¹⁾
유동부채	42,773,466	9,837,160	n.a.	충당금, 파생금융은 고정부채 간주
통화와 예금	11,360,642	0	n.a.	한국산업은행에 해당
미지급계정	20,719,924	5,801,948	n.a.	통상적 상거래에서 발생
고정부채	171,024,009	26,367,140	n.a.	
미지급계정	7,611,432	2,723,164	n.a.	통상적 상거래에서 발생
각종 충당금	4,141,374	9,268,949	n.a.	
보험예치금등	290,660	299,584	n.a.	보험예치금 및 연금전환금
파생금융	3,176,172	201,127	n.a.	
보험책임준비금	219,918	0	n.a.	별정우체국연합회등 해당
우발채무	9,882	1,314	n.a.	대차대조표에 표기된 우발채무
계산오차	- 8	1	-	유동부채, 고정부채의 합계와 총부채 금액의 차이
차입금	155,893,051	18,241,341	n.a.	단기차입금 포함
중앙정부 회계 차입	15,704,337	110,000	n.a.	
중앙정부 기금 차입	17,469,818	417,616	n.a.	
공공기관 차입	24,307,106	4,767,893	n.a.	지자체, 공기업도 공공기관
민간기관 차입	98,377,449	12,926,655	n.a.	정부보증 해외차관 포함
계산오차	- 34,341	- 19,177	-	각종 차입의 합계와 차입금 총액과의 차이

주1) 조사제의 공공기관은 100개인데 이들 중 10개는 2005년 당시 기획예산처 조사자료에서도 총자산과 총부채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의 목록은 부록의 <표 A-2> 참조.
 주2)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총자산과 총부채를 파악한 기관의 전체 개수는 304개인데, 본 연구에서 조사된 214개 기관의 총자산과 총부채를 수정하여 반영한 결과 304개 기관의 총자산은 563,863,710백만원 총부채는 360,840,163백만원으로 각각 평가되었다. 조사제의 공공기관 90개의 총자산과 총부채는 조사대상 공공기관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되었다.

그런데 <표 6>의 준정부기관에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들을 금융공기업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나라 준정부기관 전체의 총금융부채는 약 40~50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들 기관의 분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공기업으로 간주하여 추정한 금액 40조원은 준정부기관 총금융부채의 최소값으로 볼 수 있다.³⁰⁾ 그런데 <표

30) 총금융부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산업은행은 77.0조원, 한국수출입은행은 10.0조원이다. 이들을 공기업으로 간주하면 160개 준정부기관의 총금융부채는 101.9

5>뿐만 아니라 <표 6>에서도 이들 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 이유는 이들이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또 이들의 주된 목적이 중요산업 및 수출입·해외투자 등에 대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6>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분류를 감안한 현황(2005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조사대상			조사제외 공공기관(90개)
	준정부기관 (162개)	주식회사형 공기업(38개)	기예처의 추가 공기업(14개)	
총 자 산	167,695,730	101,886,795	139,623,985	154,657,200
유동자산	122,013,946	11,722,780	41,787,809	n.a.
총 부 채	138,875,093	36,204,299	74,922,390	110,838,381
유동부채	20,118,149	9,837,160	22,655,317	n.a.
통화와 예금	11,360,642	0	0	n.a.
미지급계정	6,227,104	5,801,948	14,492,820	n.a.
고정부채	118,756,937	26,367,140	52,267,072	n.a.
미지급계정	4,468,255	2,723,164	3,143,177	n.a.
각종 충당금	3,196,884	9,268,949	944,490	n.a.
보험예치금등	182,776	299,584	107,884	n.a.
파생금융	2,829,515	201,127	346,657	n.a.
보험책임준비금	219,918	0	0	n.a.
우발채무	9,882	1,314	0	n.a.
계산오차	- 7	1	- 1	-
차입금	100,469,894	18,241,341	55,423,157	n.a.
중앙정부 회계 차입	9,532,728	110,000	6,171,609	n.a.
중앙정부 기금 차입	3,501,510	417,616	13,968,308	n.a.
공공기관 차입	20,722,730	4,767,893	3,584,376	n.a.
민간기관 차입	66,678,585	12,926,655	31,698,864	n.a.
계산오차	- 34,341	- 19,177	0	-

그리고 만약 마스트리히터 조약에 의한 '일반정부 총채무'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준정부공기관'의 총금융부채에서 각종의 미지급계정과 보험책임준

조원에서 87.0조원을 공제하고 공공기관 차입금 20.7조원 대부분을 합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원 조사자료에서는 공공기관 차입을 각각의 대여기관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160개 준정부기관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일관성 있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런데 준정부기관의 공공기관 차입 대부분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160개 준정부기관의 총금융부채는 30조원 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90개 공공기관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304개에 대한 준정부기관 총금융부채는 50조원으로 추정될 수 있다.

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표 5>로부터 유동부채와 고정부채에서 미지급계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금액과 보험책임준비금의 합계액은 대략 28조 5,513억원으로 파악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제시된 ‘일반정부 총채무’ 기준에 의하면 조사대상 214개 기관에 대해서만 약 124조원이 인식된다. <표 6>의 방법으로 214개 공공기관의 ‘일반정부 총채무’를 계산하면 약 91조원이 된다.

그리고 <표 7>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공기관들에 대한 회계수치를 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외에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공공기관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이들은 지하철 공사, 도시개발공사, 시설·환경·경륜·주차관리공단, 기타 공사, 의료원, 주식회사형 기업들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형 기업들만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만을 공기업으로 간주하였다.

<표 7>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현황(2005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정부			상법상 공기업		
	조사 기관 (96개)	추정 기관 (30개)	합 계 (126개)	조사 기관 (19개)	추정 기관 (18개)	합 계 (37개)
총 자 산	19,009,637	9,583,015	28,592,652	759,465	635,456	1,394,921
유동자산	7,364,552	1,148,786	8,513,338	167,045	162,954	329,999
총 부 채	10,189,901	2,766,888	12,956,789	461,226	258,530	719,756
유동부채	3,262,543	438,884	3,701,427	170,671	84,146	254,817
통화와 예금	0	0	0	0	0	0
미지급계정	1,842,753	78,648	1,921,401	64,070	24,393	88,463
고정부채	6,932,044	2,328,004	9,260,048	290,556	174,384	464,940
미지급계정	618,665	41,260	659,925	38,018	21,310	59,328
각종 충당금	374,230	128,513	502,743	3,845	2,155	6,000
보험예치금등	63,727	11,252	74,979	2,068	1,159	3,227
과생금융	0	0	0	29	16	45
보험책임준비금	0	0	0	0	0	0
우발채무	0	0	0	0	0	0
차입금	7,032,998	1,924,480	8,957,478	357,245	200,246	557,491
중앙정부 회계 차입	100,437	49,900	150,337	91,942	51,536	143,478
중앙정부 기금 차입	1,222,393	64,010	1,286,403	10,985	6,157	17,142
공공기관 차입	2,088,901	269,164	2,358,065	6,000	3,363	9,363
민간기관 차입	3,824,978	1,550,266	5,375,244	248,318	139,189	387,507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2006년 10~12월 기간 중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협조로 대차대조표 및 차입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였다. 그런데 전체 대상 기관 163개 기관들 중에서 115개만 조사가능하였고 그 외의 48개 기관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다. 48개 기관들의 총자산, 총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등은 행정자치부의 현황자료에서 파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조사된 기관들의 유형별 자료를 참조하여 유동부채와 고정부채의 하위 계정과목들을 추정하였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준정부기관의 총부채는 13조원, 각종 충당금과 우발채무의 합계액은 0.5조원, 일반정부의 내부차입은 3.8조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의 금융부채는 약 8조원으로 계산된다. 8조원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금액에 비하면 거의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작을 것이다.

그런데 국제기준에서 비록 일반정부의 부채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책적 환경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을 채무자로 하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잔액은 국채발행액과 동일하게 간주될 필요가 있다.³¹⁾ 형식적 의미로 볼 때 중앙은행은 금융공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의 채무가 곧바로 일반정부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화안정증권은 정부가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은행에 부담시킨 채무이고, 또 OECD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와 같은 정책적 기능이 국채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국제적 비교를 위한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에는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재정부담금과 정부가 피용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연기금의 보험책임준비금은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선진화된 재정 및 정부회계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부담이 정부의 부채로 계리되고 있기 때문이다.³²⁾ 그리고 SNA지침과 GFSM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급여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정부피용자를 위한 연기금의 책임준비금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³³⁾

31) 2005년도말 현재 통화안정증권의 잔액은 155조 2,350억원에 달한다.

32) Chesson, Adrian and Fenella Maitland-Smith(2006) 참조. 우리나라에서 2004년도말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전체 총투자비는 47조 5,930억원이다.

V. 맺음말

국채발행액과 일반회계·특별회계·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합계 금액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일반정부 부문의 전체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국가채무의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일반정부 부문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의 이와 같은 한계 때문에 선진국 정부들은 재정상태에 대한 판단을 일반정부 전체 또는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채를 망라하고 있는 총금융부채 개념을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고 있다.

OECD 역시 회원국들의 재정 상태를 상호 비교하기 위한 통계지표로서 GDP 대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정부 총금융부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이외에 다음 사항들이 추가로 감안되어야 한다. 첫째, 일반정부의 내부거래를 차감한 중앙정부 기금의 부채는 국가채무에서 제외되지만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에는 포함되어야 한다(<표 4> 참조). 둘째,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의 구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된 214개 공공기관의 회계자료로부터 약 30조~150조원의 금액이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표 5>와 <표 6> 참조). 셋째, 금번 조사에서 제외된 100개 기관에 대해서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에 추가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넷째,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사실상 국채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위한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제기준의 취지와 선진국의 정부회계기준을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이들 연금의 성격을 면밀하게 살피고 국제기준의 취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들의 책임준비금 상당 부분을 부채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국가채무’의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의 적용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33) IMF(2001)의 문단 7.120~7.126 참조.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선진국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에 비교하며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의 이러한 관행에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며 빠른 시기에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 고영선외,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2004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 박형수·박기백,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2003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 옥동석, “공공부문과 국가재정의 범주: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재정논집」, 제12집 제2호, 한국재정학회, 1997년 12월.
- _____, “재정범위의 설정에 관한 연구,” 「재정운영시스템의 개선: 중기재정 관리체계, 성과관리, 재정투명성」, 2004, 한국개발연구원, pp.491~640.
- _____, “일반정부의 분류기준과 쟁점,” 「한국지방재정논집」, 2007, 제12권 제2호(발간예정).
- BEA, “Government Transactions,” Methodology Papers, U.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2005, www.bea.gov/national/pdg/mp5.pdf.
- Chesson, Adrian and Fenella Maitland-Smith, “Including Finance Lease Liabilities in Public Sector Net Debt: PFI and Other,” *Economic Trends* 2006 (636).
- EUROSTAT, *European System of Accounts*, 1996.
- EUROSTAT(2002), *ESA 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 European Commission, 2002.
- IMF(1986),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1986.
- IMF(2001),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1.
- Moulton, Brent R., “Keeping Economic Statistics Relevant

- through Updating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prepared for the ICES-III, Montreal, Canada, 2007, www.bea.gov/papers/pdg/sna_ices_iii_b_moulton.pdf.
- Oak, Dongsuk and Koh Youngsun, “Coverage of Public Finance in Korea,” in *Reforming the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2004, pp. 263~277, The World Bank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Conference Proceedings, March 2004, Korea Development Institute/The World Bank.
-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 Owned Enterprises*, 9th Meeting of the OECD Steering Group on Corporate Governance, 22-23 March 2005, DAF/CA/CG (2005)2/ANN1, 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 ONS,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debt measures,” available on the National Statistics website, 2005, UK.
- U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prepa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Eurostat, IMF, OECD.

<부 록>

<표 A-1> 본 연구의 조사대상 214개 중앙정부 공공기관

구분	기관 현황
일반 정부 (176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해방지사업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연구원,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초기술연구회, 농림기술관리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결핵협회(종합),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적십자사(본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 대한체육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별정우체국연합회, 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술연구회, 산업연구원, 산재의료관리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예술단,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문유통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언론중재위원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예금보험공사(일반회계), 예술의전당, 요업(세라믹)기술원, 원자력의학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재외동포재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일반+재보중),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정동국장, 정리금융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축산물등급판정소,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통일연구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방보호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계임산업개발원, 한국건설직연구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제노동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법인+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인문재단,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프라자산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신탁, 한국투자공사, 한국패션센터, 한국학술진흥재단(기본회계), 한국학술진흥재단(수익사업),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공기업 (38개)	경북관광개발공사, 기보캐피탈, 대한주택보증(주), 브이케이(주),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인터넷서널패스엔커머스㈜(철도공사), 철도산업개발(주), 코레일에드컴(주), KBS미디어, KBS비즈니스, KBS스카이, KBS아트비전, KBS인터넷(주), KTX관광레저(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서비스넷(주), 코레일엔지니어링(주), 파발마(주), 한국가스기술공사(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기술(주), 한국철도시설산업(주), 한국철도유통(주),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 한국철도종합서비스(주),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KDN(주), 한전기공(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표 A-2> 본 연구의 조사제외 100개 중앙정부 공공기관

구분	기관 현황
일반 정부 (77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공공기술연구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과학기술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금융센터, 군사문제연구원, 극지연구소, 농수산물유통공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대한보건협회, 대한석탄공사, 독립기념관, 민족문화추진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선박검사기술협회, 신문윤리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전쟁기념사업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업데이터,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공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한국마사회, 한국물류정보통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이즈티치연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자산신탁,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환경관리공단.
공기업 (13개)	강원랜드, 기업인증진흥센터(주), 기은SG자산운용, 기은신용정보(주), 기은캐피탈(주), 농지개발(주), 아이비케이텍(중소기업은행), 안산도시개발(주), 중소기업은행, 88관광개발(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철도개발(주)
기예처 조사제외 (10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e-KBS,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은행,

<표 A-3> 기여처가 분류한 공공기관 102개의 유형

유형	공공기관
공기업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6개)
	준시장형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8개)
준정부기관	위탁 집행형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65개)
	기금 관리형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13개)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2007년 4월 2일.

[Abstract]

National Debt and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in Korea

Dong Suk Oak

The concept of National Debt, being used traditionally by Korean government, is very much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defined by SNA and GFSM criteri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how what the differences of the two concepts are and to estimate the size of the Korean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Keywords: National Debt, General Government, Financial Liabilities

JEL Code: H5, H74